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778호 2020. 11. 25.(수)



선 결	기관의 장

조 례

제2597호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3
제2598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10
제2599호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17
제2600호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5
제2601호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30
제2602호 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33
제2603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6
제2604호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45
제2605호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50
제2606호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제2607호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59
제2608호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6
제2609호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75
제2610호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79
제2611호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	83
제2612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88

규 칙

제1298호 거창군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 96
 제1299호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109
 제1300호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118

훈 령

제442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 136

고 시

제2020-128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 고시 140
 제2020-131호 도로명주소 고시 141

공 고

제2020-1460호 거창군계획시설(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 143
 제2020-1470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96호선 외1)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44
 제2020-1494호 남상 고척마을(1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146
 제2020-1495호 남산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152
 제2020-14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155
 제2020-1500호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57
 제2020-15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159
 거창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4호 2020년도 제1회 거창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160

회 람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0년 11월 25일

거창군 조례 제2597호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에서 행하는”을 “거창군에서 하는”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현저한”을 “뚜렷한”으로 한다.

제6조 중 “높이 선양시킨”을 “드높인”으로 “단체”를 “단체 등”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추천 절차)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는 군 본청 담당관·과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 15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9조에 따라 제출된 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해당 안전에 대하여 지역의 덕망있는 사람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될 수 있다.

제9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일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조 제목 “(포상대장의 등재)”를 “(포상대장의 기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제5호 서식”을 “제5호서식”으로 “등재 하여야한다.”를 “기록·관리하여야한다.”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거창군에서 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u>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u></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u></p>
<p>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u>군수가 한다.</u></p>	<p>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u>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u></p>
<p>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u>현저한</u> 경우 2.~3. (생략) 	<p>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u>뚜렷한</u> 경우 2.~3. (현행과 같음)
<p>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u>높이 선양시킨</u> 개인이나 <u>단체</u>에 수여한다.</p>	<p>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u>드높인</u> 개인이나 <u>단체</u> 등에 수여한다.</p>
<p>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u>군의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표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여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u></p> <p>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u>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u></p>	<p>제9조(추천 절차)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는 <u>군 본청 담당관·과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 15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신 설></p>	<p>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u>① 제9조에 따라 제출된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u> <u>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지역의 덕망있는 사람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될 수 있다.</u></p>
<p><신 설></p>	<p>제9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신 설></p>	<p>제9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일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p>	<p>제12조(포상대장의 기록·관리) 이 조</p>

현행	개정안
<p>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 대장에 등재 하여야한다.</p> <p><u>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 대장에 기록·관리해야한다.</p> <p><u><삭 제></u></p>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0-88
----------	---------

제출연월일	2020. 10.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현행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던 것을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포상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적심사위원회 신설함(삭제 현행 제9조제2항, 안 제9조의2~제9조의4)

1) (현행)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 (변경)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2) 위원장 포함 7명 이내 구성

가) 위원장 부군수, 위원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

나) 위원의 직제순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

3) 운영: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긴급한 경우 등 서면심의 가능

나. 용어 순화함(안 제1조·제5조·제6조·제9조·제12조)

1) 행하는⇒하는, 현저한⇒뚜렷한, 요하는⇒필요한, 상신⇒제출, 등재⇒기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9. 8.~9. 2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11월 25일

거창군 조례 제2598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에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 포함)에서 계획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1.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연간운영계획
5.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대상 공무국외출장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과장급 이상의 군 소속 공무원 6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3조제1호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2 조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14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14조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복무선서)</u> ①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복무선서)</u> ①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에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제13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u>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 포함)에서 계획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연간운영계획 5.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대상 공무국외출장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③ (생략)

<신 설>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국외출장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과장급 이상의 군 소속 공무원 6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3조제1호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연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보상비 지급

나. 관련 조문: 제19조의4(연가계획 및 허가)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1,059	1,060	1,060	1,060	1,060	5,299

3. 관련 의견

연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비 지급으로 직원 사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0년 기준)

1. 호봉제: 본봉 29,447,054천원/12월×86%×1/30×15일=1,055,187천원

2. 일반임기제: 월액 1,870천원×84%×86%×1/30×1/7×70시간×10명=4,503천원

작성자: 행정과장 곽 승 욱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0-89
----------	---------

제출연월일	2020. 10.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연가보상비 지급 근거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기구인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안 제13조)

- 1)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타당성 심사
- 2) 중앙행정기관에서 계획한 공무국외출장은 제외

나. 위원회의 구성 등 신설(안 제14조)

- 1) 위원장 부군수를 포함하여 과장급 이상 공무원 6명으로 구성
- 2) 다른 기관·단체에서 경비 부담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위촉위원 1명 이상 포함 ⇒ 외부위원 신설로 현행 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된 내용을 조례로 그 근거 규정을 변경함

다. 조례로 위임된 연가보상비 지급근거 신설(안 제19조제4항)

- 1) 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 2) 내용: 사용하지 않은 연가(20일 초과하지 않은 범위)일수에 대해서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3) 「지방자치법」 제23조·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2020년도 예산 1,059,69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7. 9.~7. 2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0년 11월 25일

거창군 조례 제2599호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
 2. 국외에 파견·교육훈련 중인 소속공무원
 3.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소속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소속공무원
- ③ 군수는 군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무원근로자, 공중보건기사,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험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
2. 자율항목: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
③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점수를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
④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부여된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등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콘도, 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기근속 소속공무원에 대한 국외 시찰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장제용품 등 장제비 지원
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지원
5. 단체보장보험 비용 지원
6. 구내식당 운영 지원
7. 임산부 및 허리질환자 등을 위한 맞춤형 의자 지원
8. 출산축하 기념품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소속공무원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3.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전에 대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제1호의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당연 해임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3.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 시설 및 시행 중인 후생복지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제5조·제7조

나. 비용발생 요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후생복지사업 지원대상 인원 1,000명 정도 예상
- 2) 공무원 수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구분	복지포인트	878,110	1,072,500	1,104,675	1,137,815	1,171,950	5,365,050
	단체보험	240,000	280,000	290,000	300,000	300,000	1,410,000
	출산축하	7,500	7,500	7,500	7,500	7,500	37,500
	건강검진	90,000	90,000	92,700	95,481	98,345	466,526
	구내식당	0	6,000	6,180	6,365	6,556	25,101
	그밖의사업 (장비용품 등)	0	100,000	103,000	106,090	109,273	418,363

3. 관련 의견

맞춤형 복지제도와 후생복지사업으로 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과 사기 진작에 기여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0년 기준)

가. 맞춤형 복지제도

- 1) 복지점수, 단체보험, 건강검진, 출산축하
- 2) 1,330천원×914명=1,215,610천원

작성자: 행정과장 곽 승 욱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20-90
----------	---------

제출연월일	2020. 10.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거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정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 1) 적용: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 2) 적용 배제·제한: 휴직·과건·교육훈련·정직·직위해제 중인 소속공무원
- 3)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적용: 군의원·청원경찰·공무직근로자·공중보건 의사·공중방역수의사

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정함(안 제5조)

- 1) 구성: 기본항목, 자율항목
- 2) 복지점수 부여: 근무연수, 가족상황, 징계 여부 등 고려 점수화

라.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을 정함(안 제6조)

- 1) 편의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 2)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시설의 이용권 확보

마. 후생복지사업을 정함(안 제7조)

장기근속 시 국외시찰, 직장 동호회, 장제용품, 건강검진비, 단체보험비 등 지원

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정함(안 제8조~제10조)

- 1) 기능: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등 심의
- 2) 구성: 9명 이내, 직급별 대표, 노조 추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구성. 필요시 민간전문가 위촉 가능

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별표 5,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나. 예산 조치: 2021년도 예산 1,556천원 확보 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0. 8. 21.~9. 1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11월 25일

거창군 조례 제2600호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과 통일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2. 경상남도의원 1명
3.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군의 국장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관·사회·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평화통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

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9조제1항·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의 누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

는 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서·기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2. 학술회의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5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권재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67
----------	---------

발의일자	2020. 10. 20.
발 의 자	권재경, 이홍희, 김종두, 표주숙, 신재화, 최정환, 권순모, 김향란, 심재수 이재운, 박수자 의원

1. 제안이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과 통일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제13조)
- 마.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 바. 위탁관리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0. 10. 21.~10. 2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11월 25일

거창군 조례 제2601호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거창군이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하는 사무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거창군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재정 및 행정 지원) ①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다.

제4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뚜렷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권재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68
----------	---------

발의일자	2020. 10. 20.
발 의 자	권재경, 이홍희, 박수자, 표주숙, 신재화, 최정환, 권순모, 김향란, 심재수, 이재운, 김종두 의원

1.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거창군이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나. 대행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다. 재정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29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제3조·제30조·제30조의2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0. 10. 21.~10. 2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11월 25일

거창군 조례 제2602호

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등) ① 제3조에 따른 우대 또는 지원 대상인 여성기업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3조(지원사업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구매계획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 시 여성기업 우대
2. 군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여성기업 우대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2.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사업
3.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 사업

제4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 다만,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유공자 포상)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최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69
----------	---------

발의일자	2020. 10. 20.
발 의 자	최정환, 권순모, 김향란, 심재수, 이홍희, 이재운, 권재경, 표주숙, 신재화 김종두, 박수자 의원

1. 제안이유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여성기업 지원 대상·사업을 정함 (안 제2조·제3조)
- 다.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정함(안 제4조)
- 라. 유공자 포상을 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0. 10. 21.~10. 2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0년 11월 25일

거창군 조례 제2603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를 “청소년 및 청소년동호회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로 한다.

제10조 조 제목 “(사용 및 사용제한)”을 “(사용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항을 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9조(사용허가) ①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대해서는 협의로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u>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u></p>	<p>제9조(사용허가) ①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대해서는 협의로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u>청소년 및 청소년동호회에 우선권을 부여한다.</u></p>
<p>제10조(사용 및 사용제한)</p> <p>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u></p> <p><u>1. 청소년 및 일반인</u> <u>2.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u> <u>3. 그 밖에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u></p> <p>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거나 초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감염병질환자나 그 밖에 이용 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p> <p>③ <u>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u></p>	<p>제10조(사용제한 등)</p> <p><u><삭 제></u></p> <p>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거나 초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감염병질환자나 그 밖에 이용 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p> <p>② <u>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u></p>

[별표 2]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1. 거창군 청소년수련관(일반인 기준)

시설구분	기준	사용료	
		기본	추가부담
가. 대강당 (한마당터)	1회 3시간	50,000원	1) 1시간 초과 시 10,000원 2) 냉난방기 사용 시 20,000원 3)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요금의 30퍼센트
나. 소강당 (참배움터)	1회 2시간	20,000원	
다. 강의실 (한배움터1, 2)	1회 2시간	10,000원	
라. 야외공연장	1회 2시간	20,000원	

2.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일반인 기준)

시설구분	기준	사용료	
		기본	추가부담
다목적홀	1회 2시간	20,000원	- 2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당 5,000원

3.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가. 청소년수련시설

구분	기준		사용료
1) 숙박비 (1인1일)	청소년		6,000원
	일반		9,000원
2) 강당	공연 행사	오전	70,000원
		오후	100,000원
		야간	100,000원
3) 세미나실	행사 교육	오전	40,000원
		오후	50,000원
		야간	50,000원
4) 운동장	1일	경기	50,000원
		경기 외	100,000원

비고

가) 부가세는 별도임

나) 1박 기준

- (1) 그날 18:00~다음날 09:00
- (2) 식비, 시설이용료 및 수련활동비는 별도계산

다) 이용시간 구분

- (1) 오전: 09:00~12:00
- (2) 오후: 13:00~17:00
- (3) 야간: 18:00~22:00

라) 당초 허가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 (1) 30분 미만: 기준금액의 50퍼센트 추가 부담
- (2) 30분 이상~1시간 이내: 기준금액의 100퍼센트 추가 부담
- (3) 1시간 이상 초과: 매시간 기준금액의 100퍼센트 추가 부담

마) 강당 냉난방시설: 1시간 초과 사용 시 10,000원씩 추가 부담

바) 그 밖에 부대시설 및 행사기기 등의 사용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내부규정에 따름

나.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구	분	사용료		비고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1) 입장료	어른	3,000원	2,500원	20세~64세
	청소년 및 어린이	2,000원	1,500원	7세~19세
2) 체험료	체험기구 당	2,000원	2,000원	

다.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구분	규 격	사용료			
		주중	주말	성수기	추가부담
캐빈하우스 (4동)	<u>복층, 기준인원 5명, 최대인원 6명</u>	80,000원	100,000원	140,000원	1) 1시간 초과마다 10,000원 2) 추가 1인당 10,000원
방갈로 (3동)	<u>단층, 기준인원 3명, 최대인원 4명</u>	60,000원	80,000원	120,000원	1) 1시간 초과마다 10,000원 2) 추가 1인당 10,000원
전기데크 (9개소)	5미터×5미터, 6인용	25,000원	30,000원	30,000원	1) 1시간 초과마다 3,000원 2) 추가 1인당 3,000원
일반데크 (5개소)	5미터×5미터, 6인용	15,000원	20,000원	20,000원	1) 1시간 초과마다 3,000원 2) 추가 1인당 3,000원

비고

가) 장비(텐트, 코펠 등)임대는 별도 계산

나) 부가세는 별도임

다) 아동의 경우 36개월 이상부터 1인 요금 부과

라) 성수기: 7. 20.~8. 20.

마) 주말: 성수기를 제외한 주말(금요일·토요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바) 주중: 성수기와 주말을 제외한 날

[별표 3]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감면율(제11조제1항 관련)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월성우주창의과학관에 한정)

감 면 대 상	감 면 율 (사용료에 대한 백분율)
1. 국가 또는 거창군이 주관하는 청소년관련 행사	100분의 10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24세 이하 자녀를 셋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가정 6.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보호자 1명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청소년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50

개인의 경우 현장에서 증명서류 직접확인, 국가·거창군·단체의 경우는 감면신청서 첨부로 감면

[별표 4]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1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기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전액
2.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3.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사용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70퍼센트
5. 사용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80퍼센트	50퍼센트
6. 사용일 <u>그날</u>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50퍼센트	반환하지 않음

가. 반환시점은 영시로 한다.

나. 반환은 7일 이내로 한다.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0-91
----------	---------

제출연월일	2020. 10.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 될 경우 청소년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시설 사용료·감면기준 등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신청 중복 시 청소년·청소년동호인에 우선권 부여 신설함(안 제9조제2항)

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범위 법령불부합 소지규정 삭제(안 제10조제1항)

1) 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제2항

2) 내용: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국민들도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이용범위를 명시

다. 청소년활동시설 명칭 및 사용료 추가부담 등을 정함(안 별표 2)

1) 청소년수련관: 명칭 변경

2) 월성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시설: 수련활동지도로 삭제

3)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 추가부담 신설

라.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함(안 별표 3)

1) 국가보훈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모두 명시함

2)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 권고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4조·제3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8. 24.~9. 1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별표 3)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11월 25일

거창군 조례 제2604호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은도서관 지원계획 수립)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작은도서관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작은도서관 지원 대상·내용 및 그 규모
 3.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매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원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제3조(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된 작은도서관
2. 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제4조(작은도서관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료 구입비
2.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3.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4.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매년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작은도서관에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행정 지원)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순회사서 등을 작은도서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의 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은 작은도서관이 지원 결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설치·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금액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나. 관련조문: 제4조(작은도서관에 대한 재정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50	60	60	60	60	290

나. 비용추계 상세내역(2020년 기준 = 50백만원)

- 1) 순회사서 인건비: 18백만원
- 2) 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12백만원
- 3) 공립작은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 도서구입: 18백만원
- 4) 작은도서관 운영 소모품 구입: 2백만원

3. 관련 의견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하여 차별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정 세 환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0-92
----------	---------

제출연월일	2020. 10.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법률 위임 없는 작은도서관 운영기준 등을 삭제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작은도서관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작은도서관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이 법령 위임 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법률 위임 없는 작은도서관 운영기준 삭제(현행 제6조~제14조)

1) 작은도서관 공간과 위치, 운영인력,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시간, 휴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기능

2) 법제처 2017년 조례 규제개선 과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다. 작은도서관 지원계획 수립, 지원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3조)

1) 지원계획: 매년 수립, 지원 대상·내용·규모 등이 포함

2) 지원기준: 군에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된,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라. 재정 지원을 정함(안 제4조)

1) 자료 구입비,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2) 매년 운영 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 지원

마. 행정 지원을 신설(안 제5조)

1) 자원봉사자, 순회 사서 등 지원

2)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바. 환수 신설(안 제6조)

1) 지원받은 작은도서관이 6개월 내 설치·운영하지 않을 경우 환수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2020년도 예산 50,45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6. 1.~6.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0년 11월 25일

거창군 조례 제2605호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
해 거창군의 독서문화를 조성·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거창군의 주민에게 지식정보 능력의 향상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군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을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독서문화 활성화 과제 및 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등 독서문화 시설의 개선 및 독서자료 확충 등에 필요한 사항
4.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 대상 독서문화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5. 독서활동 권장·보호·독서문화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독서문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사업) 군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의 및 독서관련 교육·홍보 추진
3. 독서 동아리·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활동 프로그램 운영
4. 백일장, 독서 경진대회 등 독서문화 행사의 개최 및 독서운동 관련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문화 활동 지원)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연계된 독서문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도서관 이용 장려 및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해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도로 도서 또는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등 참가자
 2.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3.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독서 관련 행사 등 봉사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제5조 독서문화 활동 지원

나. 독서의 달 행사 등 참가자, 독서실적 우수자 등에게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1) 2021년 예산 5,000천원 확보 예정

2) 독서의 달 등 행사 참가자에게 도서·도서상품권 또는 기념품 지원,
독서실적 우수자 포상 등

4. 작 성 자

인구교육과장 정 세 환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0-93
----------	---------

제출연월일	2020. 10.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독서의 달 행사 참가자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거창군민의 독서 장려와 도서관 이용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시행을 위한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을 정함(안 제3조)
- 다.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정함(안 제4조)
- 라. 독서문화 활동 지원을 정함(안 제5조)
 - 1)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재정 지원
 - 2) 군민의 도서관 이용 장려 및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의달 행사 등 참가자, 독서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도서, 도서상품권 지원
 - 3) 독서관련 행사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지급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제12조,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5,000천원 확보 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0. 6. 23.~7. 1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0년 11월 25일

거창군 조례 제2606호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내로”를 “에서”로 “내구연한 경과자”를 “내구연한 경과자(구입 후 1년 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리의 범위는 출고할 때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u>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u>으로 하며,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p> <p>② 지원금액은 연간 300,000원 범위 <u>이내</u>로 지원하며, 전지 교체 지원의 경우 <u>내구연한 경과자</u>에 한정하여 다른 법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받은 후 추가 본인부담금에 한정하여 지원한다.</p> <p>③ 그 밖에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불가피하거나 추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에 지원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u>「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u>으로 하며,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p> <p>② 지원금액은 연간 300,000원 범위 <u>에서</u> 지원하며, 전지 교체 지원의 경우 <u>내구연한 경과자(구입 후 1년 6개월)</u>에 한정하여 다른 법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받은 후 추가 본인부담금에 한정하여 지원한다.</p> <p>③ 그 밖에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불가피하거나 추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에 지원한다</p> <p>④ <u>수리 범위는 출고할 때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u></p>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제6조(지원대상) ② 지원금액은 연간 300,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하며, 전지교체 지원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자에 한정하여 다른 법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 받은 후 추가 본인부담금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세출	군비	19,500	19,500	19,500	19,500	19,500	97,500

3. 관련의견: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감소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현황

(2019년 기준, 단위:명)

구분	배터리 교체	타이어 교체	합계
계	40	25	65
기초 및 차상위장애인	7	3	10
일반 장애인	33	22	55

※ 관내 의료기 상사(동양의료기, 이원의료기)를 통한 이용 자료 조사

2. 비용추계: 65명 × 300천원 = 1,950천원

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10명 × 300천원 = 3,000천원

나. 일반장애인: 55명 × 300천원 = 16,500천원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권재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70
----------	---------

발의일자	2020. 10. 20.
발 의 자	권재경, 이홍희, 김종두, 표주숙, 신재화, 최정환, 권순모, 김향란, 심재수 이재운, 박수자 의원

1. 제안이유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안 제6조)
- 나. 수리비 지원범위 구체화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행복나눔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0. 10. 13.~10. 1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11월 25일

거창군 조례 제2607호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00원권
2. 10,000원권

③ 거창사랑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면금액
2. 발행인의 명의 및 연락처
3. 발행 일련번호 및 바코드
4.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5. 사용자 이용안내
6. 그 밖에 군수가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 ①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거창사랑상품권의 변경된 유효기간
2. 그 밖에 변경 전 거창사랑상품권의 사용 가능 기한 등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변경으로 인한 모든 사항

②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거창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의 거창사랑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매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영업소

3.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군과 의무휴업 협약을 체결한 영업소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 중인 업소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거창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9조(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사업 및 환수) ①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2. 거창사랑상품권 홍보
3. 거창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을 말한다. 다만 설 및 추석 등 연 4회 이내, 100분의 10 이내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할인을 받았을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할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거창사랑상품권 업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거창사랑상품권 발행·유통 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2.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 및 판매대행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을 한 것으로 본다.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상품권 발행 및 운영, 판매, 할인 수수료 등

나. 관련조문

- 1) 제3조(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 2) 제9조(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사업 등)
- 3) 제10조(거창사랑상품권 업무의 위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496	145	145	145	145	1,076

3. 관련 의견

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2020년 예산: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수수료 등 496백만원

2. 2021년도 이후 예산

- 가. 상품권 할인 판매지원: 90,000천원
- 나. 판매 · 환전 수수료: 15,000천원
- 다. 상품권 제작 및 홍보비용: 26,500천원
- 라. 시스템 유지 · 관리: 13,500천원

작성자: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0-94
----------	---------

제출연월일	2020. 10.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20. 7. 2. 시행)으로 상품권의 발행·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거창군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 위임조례와 자치조례의 내용을 함께 규정한다는 것을 목적에 정함(안 제1조)
- 나.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1) 종이형 권면금액, 상품권 기재사항 정함
 - 2) 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을 정함
- 다. 판매대행점과 협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1)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서 내용
 - 2)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 공개, 판매대행점의 업무실적 제출
- 라.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7조)
 - 1) 가맹점의 등록신청서 제출, 가맹점 등록 취소 사실 공개
 - 2) 가맹점 제한 업종, 가맹점 자격 요건
- 마. 상품권 잔액환급 비율 정함(안 제8조)
- 바. 상품권 이용 활성화사업 정함(안 제9조)
- 사. 상품권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145,000천원 확보예정

다.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0. 8. 28.~9.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모델 전부 반영함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11월 25일

거창군 조례 제2608호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이하 “사회적 가치”라 한다)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정부 각 부처 및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 바.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다. 사회적경제기업 당사자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조직 등

4.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목적으로 할 것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
5.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활성화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제7조(경영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확산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2.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망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조직 판로 확대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에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우선구매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활성화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경제교통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사회적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5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시책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설립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 및 생태계 구성에 대한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망 협력 지원
5.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 및 경영 활동 지원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지원센터 운영 위탁)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업,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지원 등 행정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② 거창군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1항 중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 재정지원

나. 관련 조문: 제6조(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제9조(재정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38	60	60	60	60	278

※ 법령에 따른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지원사업은 제외

3. 관련 의견

거창군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과 교육훈련 및 판로 확대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2020년 예산: 교육 및 홍보비 38백만원

2. 2021년 이후 예산

가.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 20백만원(5년 단위)

나. 사회적경제 활성화 교육훈련: 20백만원

다.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및 판로 확대사업: 20백만원

작성자: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20-95
----------	---------

제출연월일	2020. 10.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현행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만 한정된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지원 조례의 필요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여 거창군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와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나.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다.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교육훈련, 재정지원을 정함(안 제7조~제9조)
- 마.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정함(안 제11조~제17조)
- 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근거 마련함(안 제18조·제1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사회적기업육성법」
- 나. 예산조치: 2020년도 예산 38백만원 확보
- 다.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0. 8. 21.~9. 1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 증대 사업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11월 25일

거창군 조례 제2609호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전문임업인은 독립가,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침) 산림은 「산림기본법」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산림 생태·경관 보전, 군민의 보건, 주거·휴양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성 관리해야 한다.

제4조(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업의 발전을 이한 산림사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들이

농촌·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거창군에 주소를 둔 자 이어야 하며, 독립가와 임업후계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과수 및 밤나무 재배지에 지상·항공 방제 사업
2. 산림 내 자생하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를 위한 정제 기계류 지원사업
3. 산양삼 재배자 교육
4. 산림용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5.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
6. 전문임업인 육성 및 전문임업인 단체 보조사업
7. 전문임업인에게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이나 국내외 우수 임업사업장 견학 등에 대한 지원
8.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노목의 대체작목 전환 및 전정·시비사업
9. 임산물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
 - 가. 산삼 또는 산양삼 축제 및 행사
 - 나. 체험행사
 - 다. 전국대회 행사 참가 등
10.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의 톱밥 생산비 지원
11. 그 밖에 거창군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발생

나. 관련조문: 제5조(지방보조금의 지원 범위)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총 비용(a - b)	630	700	700	700	700	3,430	
세출	국비	1,625	1,700	1,700	1,700	1,700	8,425
	도비	165	200	200	200	200	965
	군비	630	700	700	700	700	3,430
	소계(a)	2,420	2,600	2,600	2,600	2,600	12,820
세입	국비	1,625	1,700	1,700	1,700	1,700	8,425
	도비	165	200	200	200	200	965
	소계(b)	1,790	1,900	1,900	1,900	1,900	9,390

3. 관련 의견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2021년 기준)

가. 공모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 : 2,165백만원

나. 산양삼, 두릅, 고로쇠 등 산림소득 지원사업 : 172백만원

다. 임업 관련 연찬회, 교육, 행사 지원 : 83백만원

작성자: 산림과장 최태환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박수자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20-71
----------	---------

발의일자	2020. 10. 20.
발 의 자	박수자, 이홍희, 이재운, 권재경, 표주숙, 신재화, 최정환, 권순모, 김향란, 심재수, 김종두 의원

1. 제안이유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가의 소득증대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 제2조)
- 나. 산림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정함(안 제3조)
- 다. 군수 및 임업인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라. 임업인등에 대한 지원 범위 및 재정지원을 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산림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0. 10. 21.~10. 2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11월 25일

거창군 조례 제2610호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약초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초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초유통센터의 설치 및 업무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에 따라 거창군 약초유통센터(이하 “약초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약초유통센터는 집하장, 창고, 전처리(前處理)장 및 판매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약초유통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일원에 둔다.

④ 약초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약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별, 포장, 규격출하, 가공 및 판매
2. 약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약초의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약초유통센터 운영의 위탁 및 이용료) ① 군수는 약초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약초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약초유통센터의 운영 실적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조례 제2571호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삭제한다.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약초유통센터 시설장비 구입비, 유지비

나. 관련 조문: 제2조(약초유통센터의 설치 및 업무 등)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78	70	70	70	70	358

3. 관련 의견

거창군 약초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약초유통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약초유통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20백만원

나. 약초유통센터 시설장비 구입비: 50백만원

작성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안 번호	2020-96
----------	---------

제출연월일	2020. 10.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약초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거창군 약초유통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1) 약초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

나.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업무를 정함(안 제2조)

1) 설치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2) 업무: 약초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 및 판매, 홍보 등

다. 약초유통센터 위탁 및 이용료(안 제3조)

1) 근거: 법 제51조제2항·제3항

2) 생산자단체 및 전문유통업체에 위탁

3)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징수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나. 예산조치: 2020년도 예산 78백만원 확보

다.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9. 17.~10. 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11월 25일

거창군 조례 제2611호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별,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 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
 - 나. 군 소재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군 지역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유통·공급 및 품질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행정·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군민(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

③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군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군민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먹거리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③ 군민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유통·공급과 지역 먹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먹거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거창푸드산업 육성지원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2.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 공급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4. 지역 먹거리 소비증진 및 홍보
5. 군민 참여 등 지역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6.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먹거리 실태조사)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해야 한다.

1. 군민의 지역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등 실태 조사
2. 지역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3. 지역 먹거리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 먹거리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소재 회사의 급식담당자 또는 학교급식담당 영양교사·조리사 등
2. 지역 먹거리 관련 생산자조직·소비자조직 등의 대표
3. 지역 먹거리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또는 사회적 기업 대표
4.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5.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 업무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

의안 번호	2020-97
----------	---------

제출연월일	2020. 10.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군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여 거창군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역할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다.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먹거리 실태조사를 정함(안 제6조·제7조)
- 라. 재정지원을 정함(안 제8조)
- 마. 먹거리 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정함(안 제9조~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0. 9. 1.~9. 2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7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11월 25일

거창군 조례 제2612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0미터 내로 하여야 한다.”를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수처리구역”을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공공하수도 사용료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가산금) ① 군수는 사용료등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 x 2/100 x 12개월 x 연체일수/365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미납요금의 100분의 2

제30조를 삭제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소멸시효) 사용료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미납된 사용료등: 3년
2. 과오납된 사용료등: 5년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면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u>50미터 내로 하여야 한다.</u></p>	<p>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면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u>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u></p>
<p>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u>하수처리구역을</u> 대상으로 징수한다.</p> <p>②~③ (생략)</p>	<p>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u>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를</u> 대상으로 징수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6조(감면) ① 군수는 <u>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u>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6조(감면) ① 군수는 <u>공공하수도 사용료를</u>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u>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u>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u>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u>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4조부터 제97조, 제199조를 준용한다.</p>	<p>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u>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u>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u>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해야 한다.</u></p>
<신 설>	<p>③ <u>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u></p>
<신 설>	<p>④ <u>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제29조(가산금)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제30조(준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 설>

제29조(가산금) ① 군수는 사용료등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x2/100x12개월x연체일수/365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미납요금의 100분의 2

<삭 제>

제30조(소멸시효) 사용료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납된 사용료등: 3년
2. 과오납된 사용료등: 5년

[별표 7]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제26조제1항)

감 면 대 상	감 면 율
<p>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p> <p>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p> <p>다.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의 보훈대상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p>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p>
<p>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p> <p>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p>	<p>100퍼센트</p>

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50퍼센트	
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	20퍼센트	
아.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는 지역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자	1년차	30퍼센트
	2년차	20퍼센트
	3년차	10퍼센트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시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균소재 사업장	50퍼센트	

주) 감면비율은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비고

1. 가목에서 **사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음
2. 가목·**나목**·**다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가정용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실제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함. 다만, 1개의 계량기로 부과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아목**의 경우 지방상수도로 전환 후 2년 이내에 급수신청의 경우에 한정하며, 4년차부터는 정상요금을 적용함
4. **자목**에 따른 감면기간은 3개월.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0-98
----------	---------

제출연월일	2020. 10.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시 사용료 부과대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자로 한정하여 일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고, 이의신청 결정·통지 기간 마련 및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 설정 등 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체계를 개선하여 군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안 제2조)

- 1) 공공하수도로부터 50미터 이내
- ⇒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나.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자로 한정
(안 제15조)

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기간 등 마련(안 제28조제2항~제4항)

- 1)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라 60일 이내 통지
- 2) 이의신청 절차 등은 규칙으로 위임

라. 사용료등에 대한 가산금 규정 정비(안 제29조)

마. 소멸시효를 정함(안 제30조)

- 1) 미납 사용료등의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
- 2) 과오납 사용료등의 채무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

바.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정비 및 신설(안 별표 7)

- 1)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
- 2)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 대상자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15조·제65조, 「지방자치법」 제140조, 「민법」 제163조, 「지방재정법」 제8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8. 28.~9.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국민권익위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2019. 4. 29.)
전부 반영함

거창군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0년 11월 25일

거창군 규칙 제1298호

거창군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거창군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이나 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군의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만 적용한다.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 공무국외출장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장 예정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심사요청을 해야 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 ① 허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으면 조례 제13조 각 호의 위원회 심사대상에 속하는 사항은 회의에 부치고, 그 외의 공무국외출장은 출장의 필요성,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재무과장, 경제교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촉위원은 해당 심사 안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촉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장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공무국외출장으로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 할 수 있다.

- ④ 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 소속부서의 공무원인 경우 등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은 허가부서에서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소양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공무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현지활동 등)**
- ① 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공무국외출장의 목적·기간·인원·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 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공무국외출장자가 귀국보고서 및 그 밖의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배워서 익힌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보고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항목	확인사항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같은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가?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같은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3. 공무국외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2. 출장경비가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출되었는가?		
	3. 공무국외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다른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류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 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류비			준비금	교육비	그 밖에
			일비	식비	숙박비			

4. 출장효과

- 붙임 1. 공무국외출장경력서 1부.
 2. 공무국외출장자수칙 1부.
 3. 항공운임 증명서 1부.

[붙임 1]

공무국외출장 경력서

1. 주 소:
2. 성 명:
3. 생년월일:
4. 최근 5년간 공무국외출장 경력

출장기간	소속부서	직위(급)	출장목적(출장경력)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붙임 2]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결과 보고 시 귀국 보고서 등 모든 보고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한다.
4. 출장일정을 충분히 지키고 개인적인 여행을 삼가며,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중에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7. 성숙된 국외출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출장 선물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공무국외출장자:

(인)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표준 서식

1. 출장개요

- 가. 목적
- 나. 기간
- 다.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라. 출장자 인적사항

2. 출장내용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3. 시사점 및 특이사항

- 가. 시사점
- 나. 특이사항

선물수령 여부: 예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예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4. 첨부자료

- 가.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나.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1)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2) 호텔 등 숙박비 청구서(Invoice) 또는 영수증
 - 3)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다.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1)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2)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거창군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0-63
----------	---------

제출연월일	2020. 10. 12.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공무국외여행이라는 용어를 공무 수행을 위한 출장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고, 심사 시 외부위원 위촉, 심사기간 확대를 통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규칙 전반): (현행) 여행 ⇒ (변경) 출장

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삭제(현행 제6조)

1)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신설

2)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자문위원회 설치하는 조례에 근거를 뒤야 함

다. 공무국외출장 심사기간 확대(안 제4조)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20일 전 제출 ⇒ 출국 30일 전 제출

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6조)

1) 당연직위원: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재무과장, 경제교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 (삭제) 민원소통과장

2) 위촉위원 신설: 출장경비를 외부기관에서 지원받는 출장 심사 시 외부위원 1명 위촉, 해당 안건 심사 후 자동 해촉

마. 출장결과 보고서 공개기한 명시(안 제10조)

1) 보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3조

2)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제1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9. 22.~10. 1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11월 25일

거창군 규칙 제1299호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에 따라 종결처리 이후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 재접수 등 민원의 종합적 검토 및 조정
3. 민원인 폭언·폭행 등 법질서 위반행위 근절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대책
4. 상습적 폭언·협박 등이 발생하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민원인과 관련 외부전문가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과반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영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그 밖의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회피·해촉) 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해당 안건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여러 명일 경우 직제순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한다.

1. 처리주무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
2. 이해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불가, 반려민원은 관련 법규적용 타당성, 법적 절차 이행여부, 법 규정의 현실 적합성, 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4. 공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관계부서에 권고
5. 법령·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설득

② 안건에 대하여 민원인 및 관련부서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준다.

③ 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9조(심의 결정) ① 위원회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퇴장한 후 해당 안건에 대한 처리방침 등을 결정한다.

② 처리주무부서 및 관계부서는 심의결정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원총괄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처리주무부서의 민원처리 결과 회신) 처리주무부서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처리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이 경우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근거, 이의제기 절차 등을 안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접수일자			처리기한	
민원인	성명	(남/여)	연락처	
	주소			
민원명				
민원처리 주무부서			관계 부서·기관	
민원요지				
심의를 요하는 사항				
민원처리 주무부서 검토의견				
붙임 1. 심의 자료 부. 2. 관련 증명자료 부. 3. 그 밖의 참고자료 부.				
위와 같이 심의 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처리주무부서장			(서명 또는 인)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서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심 의 안 건			
의안번호	제 호	심의연월일	
안 건 명			

심 의 결 과						
심의 위원수	정원		참석		불참	
가결 위원수			부결 위원수			
심의 결과 (결정요지)						

년 월 일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4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장 소	
위원참석	정 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민원명				
접수일자			접수번호	
민원인성명			주 소	
민원요지				
회의내용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의안 번호	2020-64
----------	---------

제출일자	2020. 10. 12.
제 출 자	민원소통과장

1. 제안 이유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법령 위임범위에서 구체화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다. 위원의 회피·해촉을 정함(안 제4조)
- 라. 위원장 직무, 위원회 운영(안 제5조·제6조)
- 마. 안건심의, 의견청취, 심의 결정, 간사, 운영세칙을 정함(안 제7조~ 제11조)
- 바. 처리주무부서의 민원처리 결과 회신을 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0. 9. 9.~9. 2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별지 제1호서식에 성별란 신설)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11월 25일

거창군 규칙 제1300호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 ①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의 판매량, 회수량 등 거창사랑상품권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 신청한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 자격요건, 등록 제한업종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등록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가맹점 등록 현황(변경·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4조(거창사랑상품권 이용규약 및 할인제한) ①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규약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거창사랑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거창사랑상품권의 환전 청구 및 한도) ① 가맹점은 법 제9조에 따라 환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기본 환전 한도는 최대 월 5천만원으로 한다.

제6조(환전된 거창사랑상품권의 처리)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거창사랑상품권을 일자와 권면 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거창사랑상품권은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30일 내에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여 폐기 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폐기 조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7조(판매대행점에 대한 수수료)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판매대행점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제8조(거창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세부기준) 군수는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 1인당 할인 판매 한도는 월 100만원 또는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맹점과 법인의 경우에는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다.

제9조(환전되지 않은 상품권의 귀속)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는 거창사랑상품권의 판매금액은 군에 귀속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될 때에는 판매금액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권면액의 90퍼센트로 한다.

제10조(발행대장 및 회계장부) ①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거창군과 거창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의 거창사랑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일부터 1년으로 하고,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하에 재협약한 것으로 본다.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3조(총괄 판매대행점) 총괄판매대행점은 거창사랑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지역 판매대행점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거창사랑상품권은 5천원권, 1만원권으로 발행한다.

제5조(유통지역과 유효기간) ① 거창사랑상품권이 유통되는 적용범위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②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과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거창사랑상품권 관리) ① 거창사랑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 보관·반출한다.

② 총괄판매대행점은 납품하는 거창사랑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 ③ 판매대행점은 거창사랑상품권의 출납현황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거창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④ 판매대행점은 거창사랑상품권 판매·환전 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거창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출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거창사랑상품권 관리·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7조(할인율) ① 거창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원칙적으로 개인 사용자에게 한정하여 6퍼센트를 적용하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10일 전에 통보한다.

제8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8,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7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교환처)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장소는 판매대행점에서 한다.

제10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참석·확인하여 폐기한다.

제11조(상품권 위조·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의무) 거창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제13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조례·규칙 포함)이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거창군수와 상품권 판매대행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상품권 발행권자

상품권 판매대행점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주소

대표자 거창군수

(서명)

대표자

(서명)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거창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거창사랑상품권 판매·환전 현황

(년 월분)

권종	인수		판매		환전		환전 잔액		재고	
	일련 번호	장수	일련 번호	장수	일련 번호	장수	일련 번호	장수	일련 번호	장수
계										
5천원권										
1만원권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사랑상품권 판매·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직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청인	상 호		업 종 취급품목	
	대표자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업소 소재지			
	주 소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거창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거래통장 사본 1부
------	-----------------------------------

거창군 - 호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

○ 상 호:

○ 소 재 지:

○ 성 명:

○ 생년월일: (남, 여)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거창사랑상품권 이용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자인 거창군과 거창사랑상품권의 사용자가 거창사랑상품권을 운영·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거창사랑상품권의 종류는 5천원권, 1만원권으로 한다.

제3조(거창사랑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거창사랑상품권을 거창군이 지정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거창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거창군이 발행한 거창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거창사랑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② 사용자는 거창사랑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 ③ 발행된 거창사랑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유효기간)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거창사랑상품권의 환급) 거창사랑상품권의 권면 금액의 70퍼센트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사용자는 거창사랑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해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분실) 거창군은 거창사랑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되어 거창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창사랑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거창사랑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9호서식]

거창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권 면 액	매수	폐기방법	비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거창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직 성 명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거창사랑상품권 발행대장

인수 일자	발행번호		발행장수	발행금액	보관 장소	결 재		
						담당자	담당 주사	과 장
	5천원권							
	1만원권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0-57
----------	---------

제출일자	2020. 9. 17.
제 출 자	경제교통과장

1. 제안 이유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판매대행점 협약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나. 가맹점의 등록·관리에 관한 절차·서식 등을 정함(안 제3조)
- 다. 이용규약 및 할인제한을 정함(안 제4조)
- 라. 환전 청구·한도, 환전된 상품권 처리 등을 정함(안 제5조·제6조)
- 마. 할인판매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8조)
- 바. 환전되지 않은 상품권의 귀속을 정함(안 제9조)
- 사. 발행대장 및 회계장부를 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3조,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0. 8. 28.~9.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 창 군 수

서 명 생 략

2020년 11월 25일

거창군 훈령 제442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소속공무원의 맞춤형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②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복지점수 부여) ①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기본 복지점수: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 복지점수: 근속 연수, 부양 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복지점수

②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본 복지점수
2. 변동 복지점수

가. 근속 복지점수: 근속기간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

다만, 거창군수, 거창군 의회 의원에게는 200점을 일률적으로 배정

나. 가족 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부모·자녀 1명당 5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 다만, 셋째 이후 자녀에게는 1명당 150점씩 배정

다. 출산축하 복지점수: 해당연도 출산한 소속공무원의 첫째 자녀 200점, 둘째 자녀 300점, 셋째 이후 자녀 500점 추가 지급. 이 경우 신청에 따른다.

③ 제2항제2호가목의 근속기간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2항제2호나목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다.

⑤ 개인별 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 점수는 가산되지 않는다.

제5조(복지점수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 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정직, 직위해제, 면직, 해임, 파면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단, 1일자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⑤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기관을 달리하는 전입·전출은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른다.

1. 전출: 전출하는 달까지의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정산, 다만 1일자 전출자는 그 달의 복지점수 사용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는다.
 2. 전입: 전입한 다음 달부터의 복지점수를 결정하여 배정
다만, 1일자 전입자는 그 달부터 복지점수를 결정·배정한다.
- ⑥ 가족 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수 증가 등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여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6조(복지카드 사용)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비용지급 및 회계처리) ① 맞춤형 복지제도 전산관리시스템에 따라 복지항목 서비스를 제공 받을 사람은 복지카드를 지정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하고,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부서에서는 지난달 1일에서 말일까지 이용한 위탁업체의 대금 청구에 대하여 청구내역을 검토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예산에서 필요한 금액을 맞춤형복지제도 정산용 위탁관리회사의 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면 카드사용에 대하여 자동 정산된다.

② 맞춤형복지제도 관리 운영자는 매월 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복지비 지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복지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처리를 함으로써 회계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제8조(복지제도 운영실태 점검 등) ①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복지실태를 점검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

1. 제안이유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정하여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규정 전반): 포인트⇒복지점수

나. 거창군 공무원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변경 및 삭제

1) 목적 내용 변경(안 제1조)

2) 조례에 규정된 내용 삭제(현행 제2조, 제4조~제7조, 제9조~제12조, 제16조, 제17조)

다. 복지점수 부여기준 변경(안 제4조)

1) 기본항목: 전원에게 650포인트 배정 ⇒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

라. 복지점수 관리를 정함(안 제5조)

1) 신규임용, 전입, 복직 등 발생시 사유 발생한 달의 1일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

2) 전출, 정직, 직위해제, 면직, 해임, 파면, 휴직 등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 기준 월단로 정산

마. 비용지급 및 회계처리(안 제7조)

1) 맞춤형 복지제도 전산관리시스템 이용, 대금지급 등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거창군 공무원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예산조치: 2020년도 예산 1,215,62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 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거창군수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 현황

저수지명	위 치	규 모				정비완료일
		총저수량 (천㎥)	길이 (m)	높이 (m)	수혜면적 (ha)	
덕산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1440	185	151	24	40	2016. 8. 2.
장백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419-2	10	50	7	7	2017. 5. 22.
갈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930-2	13	57	7	32	2018. 7. 11.
진산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307-1	9	103	4	6	2019. 1. 8.
고신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 산89-2	12	85	6	3	2019. 1. 12.

2. 지정해제 사유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완료

3. 재해위험저수지 관리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건설과(☎055-940-3543)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25.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144 등 10건
- 폐지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1길 56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786-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144	20090702	20201125	지명(덕유산+월성계곡) 활용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946-17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밤티재로 1288-36	20091228	20201125	밤티재라는 지명이 반영된 도로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86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주곡로 134	20091228	20201125	주상면의 옛지명이 반영 된 도로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292, 산68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개금길 300	20090401	20201125	금이 많이 나왔다하여 개금이라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 반영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학리 8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내학길 114-115	20090401	20201125	내학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부여
6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690-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5길 92-39	20091228	20201125	동례길의 시점으로부터 다섯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부여
7	경상남도 거창군 옹양면 죽림리 515-3	경상남도 거창군 옹양면 운평길 23-78	20090401	20201125	마을이 낮은 들 가운데 자리하여 늘 안개가 많이 끼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부여
8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169-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지리재길 191-41	20091228	20201125	지리재라는 지명이 반영된 도로	부여 (직권)
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학리 477-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학리길 562	20090401	20201125	행정구역명 학리를 이용하여 학리길로 명명	부여
1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233-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1길 67	20090401	20201125	마을에 척법을 가르치는 서당이 있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부여 (직권)
1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21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1길 56	20090401	20201125	마을에 척법을 가르치는 서당이 있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폐지 (직권)

●거창군 공고 제2020-1460호

거창군계획시설(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9-126호(2019.11.7.)로 실시계획 인가된 거창군계획시설(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거창군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산196-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시설:수도공급설비)
 - 명 칭 : 거창읍 가지리 배수지 신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의 면적 : A=973.0㎡
 - 사업의 규모 : 배수지 물탱크 설치 2개소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 명 : 거창군수(수도사업소장)
4. 사업시행기간 : 2019. 11. 07. ~ 2020. 06. 25.
5.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0 - 1470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96호선 외1)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거창군 고시 제34호('19.04.03), 경상남도 고시 제103호('95.05.12) 및 경상남도 고시 제115호('79.05.24)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196호선, 2-197호선) 사업시행 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거창군수

1. 사업개요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폭	면적	시점	종점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196호선)	가조	마상	소로	2	196	106	8	687	가조면 마상리 189-1	가조면 마상리 171-1	경고103호 (‘95.05.12) 경고115호 (‘79.05.24)	
	도시계획도로 (소로2-197호선)	가조	마상	소로	2	197	92	8	765	가조면 마상리 184-5	가조면 마상리 174-2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다. 사업명 : 가조 수월리(소로2-196호선 외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열람기간: 신문개제 익일로부터 14일간

4.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당초 - 2020. 06. 30.

변경 - 2021.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붙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8,448	1,452					
1	가조면 마상리	184-5	도	60	22		거창군			2-197
2	"	184-3 (184-7)	전	716	133		거창군			2-197
3	"	185 (185-2)	과	986	142		거창군			2-197
4	"	186 (186-1)	과	2,469	290		거창군			2-197
5	"	174-2	전	196	59		거창군			2-197
6	"	189-6	도	763	69		거창군			2-196
7	"	188-5 (188-6)	대	507	12	가조면 마상리 189-1	장사준			2-196
8	"	188-2	과	59	59	가조면 마상리 189-1	장사준			2-196
9	"	188-3	대	132	132	가조면 마상리 189-1	장사준			2-196
10	"	187 (187-2)	과	936	238		거창군			2-196
11	"	172-2 (172-3)	전	739	212		거창군			2-196
12	"	171-2 (171-5)	전	529	68		거창군			2-196
13	"	171-1	전	356	16		거창군			2-196

※ 관계도면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 및 열람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주소: 50132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이나 전화(055-940-3592, 3595), FAX(055-940-3579), Email : oodles1217@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끝”.

거창군 공고 제2020 - 1494호

남상 고척마을(1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에서 남상면 전척리 일원에 시행예정인 『남상 고척마을 (1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사업인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청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 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거창군수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거창군수(건설과장)
-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 업 명 : 남상 고척마을(1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일원
- 다.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1,428m, B=8m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산69번지 일원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
⇒ ☎055-940-3552
-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공부상		편입		소유자		비고
			지목	면적	지목	면적	주소	성명	
1	남상면 전척리	산69	임	37,539	임	1076	대구광역시 서구 종리동 99 종리시영아파트 9-106	김수정	
2	"	572	답	2,967	답	7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417	이접수	
6	"	산70	임	2,512	임	189		정종수	
7	"	산70-1	임	197	임	197		정종수	
9	"	산70-2	임	167	임	10		정종수	
10	"	574	답	453	답	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2길 33,106동 1301호	박행진	
11	"	582	답	1,626	답	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226	정희원 외1인	
13	"	574-2	답	168	답	11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2길 33,106동1301호	박행진	
14	"	575	목	1,193	목	26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65 라일락타운 시동 101호	이점도	
15	"	산128	임	157,040	임	356	미합중국뉴욕11361베이사이드200 -23 45 아베 2층	김찬호 외1인	
17	"	산128-1	임	468	임	468	미합중국뉴욕11361베이사이드200 -23 45 아베 2층	김찬호 외1인	
18	"	산128-2	임	79	임	25	미합중국뉴욕11361베이사이드200 -23 45 아베 2층	김찬호 외1인	
19	"	산123-1	임	330	임	33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49-1	강창욱	
20	"	산123-2	임	322	임	7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49-1	강창욱	
22	"	575-1	답	822	답	47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길 48,102동 603호	허영균	
24	"	577-2	임	72	임	38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213-6,창신아파트 206호	김판수	
25	"	577	임	183	임	37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213-6,창신아파트 206호	김판수	
26	"	산123-4	임	169	임	8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49-1	강창욱	
27	"	산123	임	64,914	임	42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49-1	강창욱	
28	"	산123-3	임	513	임	51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49-1	강창욱	
29	"	579	답	1,727	답	1,04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2길 62,104동1204호	이혜경	
31	"	580-1	답	2,307	답	43	대구광역시 동구 평화로 83-17	정건상	
33	"	산122-1	임	64,527	임	659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상곡3길28,202동1306호	박정희	
36	"	589	답	2,213	답	21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월평리 1147	김광수 외2인	
38	"	669	답	1,559	답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길 48,102동 603호	허영균	
41	"	산122-2	임	1,919	임	694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95-19 수정주택 지-1	박재규	

번호	소재지	지번	공부상		편입		소유자		비고
			지목	면적	지목	면적	주소	성명	
43	남상면 전척리	645-3	전	90	전	9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832	이한호	
44	"	645-1	전	3,034	전	8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832	이한호	
46	"	646	답	988	답	14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849	염용규	
48	"	647	답	1,108	답	23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21-2 영광그리파크 나동 307호	염창수	
50	"	산109	임	4,044	임	8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664	이종민	
52	"	649-4	답	529	답	14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845-1 서강파크아파트 904호	이이균 외2인	
54	"	산113-1	임	1,080	임	116		이재하	
55	"	648	답	587	답	44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고척길 289-13	이한홍	
56	"	산114	임	195	임	19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664	이한홍	
58	"	산113-3	임	16	임	16		이재하	
59	"	산114-2	임	4,438	임	16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664	이한홍	
60	"	662	전	860	전	234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845-1 서강파크아파트 904호	이이균 외2인	
62	"	624-1	답	1,702	답	279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92 장미아파트 401-814	허동규	
67	"	624-2	답	1,117	답	11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845	주기화	
68	"	624-3	답	1,123	답	196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62-10	염종학	
69	"	657	전	1,335	전	23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28길 33-7	염창현	
70	"	624-4	답	1,208	답	22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832	이한호 외1인	
72	"	624-5	답	1,702	답	16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10-29 대한아파트 805호	이우식	
74	"	653-1	답	99	답	9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10-29 대한아파트 805호	이우식	
75	"	653-2	답	35	답	3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829	이병성 외1인	
76	"	624-6	답	565	답	3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829	이병성 외1인	
77	"	산115	임	287,603	임	1,919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06-1	대현동래 정씨 통정파종 증	
78	"	624-7	답	709	답	16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756	이가선	
79	"	624-12	답	61	답	6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756	이가선	
80	"	654	답	46	답	4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756	이가선	
85	"	622	전	1,154	전	19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7길 29	양경녀	
86	"	627	답	1,384	답	183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57-103 극동아파트 1-801	이한성 외3인	

번호	소재지	지번	공부상		편입		소유자		비고
			지목	면적	지목	면적	주소	성명	
88	남상면 전척리	619	전	1,460	전	28		염갑전 외7인	
90	"	619-1	전	28	전	28		염갑전 외7인	
92	"	629	답	512	답	18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830	고척합천이씨 송정파중중	
93	"	772-1	전	198	전	19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756	이가선	
95	"	772	전	2,529	전	51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756	이가선	
99	"	771-1	전	1,198	전	214	경상남도 마산시 산호동 45-41	이우식	
100	"	771-4	전	1,137	전	33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771-4	이한정	
101	"	776-1	도	51	도	5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60	합천이씨 귀업공파중중	
102	"	771-2	임	473	임	2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771-4	이한정	
103	"	771-5	도	7	도	7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828	이영기	
104	"	776	임	2,689	임	11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60	합천이씨 귀업공파중중	
105	"	790-1	도	34	도	34		손이옥	
106	"	787	전	655	전	11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6 강촌마을 709-805	염철용	
107	"	790	전	379	전	82		손이옥	
108	"	789-1	도	3	도	3		허룡	
109	"	788	임	145	임	10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1길 288-1	허창길	
110	"	789	임	66	임	38		허룡	
111	"	788-1	도	20	도	20		허룡	
112	"	791-1	전	659	전	1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하동1길 46-7	염철조	
113	"	791-5	도	2	도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하동1길 46-7	염철조	
114	"	786	전	2,223	전	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55 벽산아파트 107-907	염성식	
115	"	786-1	도	2	도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55 벽산아파트 107-907	염성식	
116	"	791-6	도	22	도	2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고척길 464	정복순	
117	"	791-2	전	2,100	전	13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고척길 464	정복순	
119	"	793-2	도	110	도	1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1길 288-1	허창길	
120	"	785-1	도	8	도	8		허옥암	
121	"	793	전	391	전	28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1길 288-1	허창길	

번호	소재지	지번	공부상		편입		소유자		비고
			지목	면적	지목	면적	주소	성명	
122	남상면 전척리	794-2	도	273	도	244		이인하 외3인	
123	"	794	임	184	임	56		이인하 외3인	
124	"	795	임	1,239	임	180		이인하 외3인	
126	"	795-1	도	149	도	149		이인하 외3인	
128	"	692-2	답	701	답	22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756	이한주	
130	"	796-1	도	13	도	1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756	이한주	
131	"	758-2	구	47	구	47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초동리	박정임	
132	"	796	답	320	답	23.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756	이한주	
134	"	796-2	도	4	도	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756	이한주	
135	"	758-5	답	93	답	9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756	이한주	
137	"	693-1	답	2,652	답	26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756	이한주	
138	"	628	답	1,010	답	4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832	이한호	

거창군 공고 제2020 - 1495호

남산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에서 주상면 남산리 일원에 시행예정인 『남산 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사업인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청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 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거창군수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거창군수(건설과장)
-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 업 명 : 남산 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일원
- 다. 사 업 량 : 도로 사면 정비 1식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산6-1번지 일원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
⇒ ☎055-940-3552
-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공부상		편입		소유자		비고
			지목	면적	지목	면적	주소	성명	
1	주상면 남산리	산6-1	임	5,500	임	1,237	거창읍 거열로 7길 29, 106동 1402호(대경넥스빌)	이환철 외 2인	
2	"	산5-3	임	25,502	임	186	대구시 북구 칠성도2가 269	백도중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의거 「지동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12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0. 11. 24. ~ 2020. 12. 8.(14일간)
3.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지적재조사담당(☎055-940-33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2020. 11. 24.

거 창 군 수

지동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번호	토지소재지			종전 토지			산정 토지			면적증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공시송달사유	비고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지목	면적 (㎡)	증가 (㎡)	감소 (㎡)	주소	성명		
1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143-2	도로	36	143-2	도로	36.0	0.0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김*삼	주소불명	
2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138-2	답	40	138-2	답	40.0	0.0			김*주	주소불명	미등기
3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131	대	202	131	대	202.0	0.0			오*근	주소불명	미등기
4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134-1	도로	20	134-1	도로	20.0	0.0			이*준	주소불명	미등기
5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136-1	도로	53	136-1	도로	53.0	0.0			정*운	주소불명	미등기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136-3	도로	17	136-3	도로	17.0	0.0					
6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135-5	도로	17	135-5	도로	17.0	0.0			하*진	주소불명	미등기
7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414-14	대	217	414-14	대	303.7	86.7		대구광역시 북구 매전로 **	맹*호	폐문부재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거창군 계획조례」의 제7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거 창 군 수

1. 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2,668	증) 2,668	2,668	100.0	
계획관리지역	-	증) 2,668	2,668	100.0	
보전관리지역	2	감) 2	-	-	
농림지역	2,666	감) 2,666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북상면 갈계리 1488-2번지 일원	농림 지역	계획 관리지역	2,666	100% 이하	· 거창군 북상면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마을순환버스 환승주차장을 결정함에 따라 시설의 용도 및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토지 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②	북상면 갈계리 1433-2번지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2	100% 이하	

2) 근거시설(교통시설 : 주차장) 결정(안)

가.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주차장	북상면 갈계리 1488-2번지 일원	-	증)2,668	2,668	-	

나. 주차장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주차장	· 신설 - 위치 : 북상면 갈계리 1488-2번지 일원 - 면적 : 2,668㎡	· 거창군 북상면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마을순환버스 환승주차장을 결정하고자 군관리계획(주차장)으로 결정(신설)하려 함

2.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3.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 위의 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7호 , 「자동차등록령」 제3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이 지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 등 특정동산 처당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차령초과 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0. 11. 25.(수) ~ 2020. 12. 9.(수)
3. 공고방법: 홈페이지, 시군구보
4. 공고대상

자동차 소유자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가입류권자)	송달지	반송사유
차량번호	차명	성명				
부산80두 4410	포터 장후터 블랙	장*영	자동차가입류	야*수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	폐문부재

5. 기타사항
 -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후에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5항의 규정에 따라 말소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민원담당(☎055-940-3295)

2020년 11월 25일

거 창 군 수

2020년도 제1회 거창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0년도 제1회 거창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11월 23일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비고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수출관련 업무전반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업 제한사유가 없고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만20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소 속	임용등급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수출관련 업무전반	<p>▶ 일반요건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p> <p>①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②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③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관련분야 : 해외유통·영업 또는 수출·통상 분야 실무경력</p> <p>※ 관련학과 : 무역, 통상, 경제, 경영, 외국어 등 수출관련 분야 전공</p>															
			우 대 요 건															
			<p>▶ 영어회화 능통자 우대 (아래의 어학성적 및 능력적격성을 보유한 자)</p> <p>○ 어학능력1</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테스</th> <th>토익</th> <th colspan="2">토플(TOEFL)</th> </tr> <tr> <th>(TEPS)</th> <th>(TOEIC)</th> <th>(PBT)</th> <th>(IBT)</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기준 점수</td> <td>700점 이상 (‘18.5.12. 前 시험)</td> <td rowspan="2">800점이상</td> <td rowspan="2">560점이상</td> <td rowspan="2">83점이상</td> </tr> <tr> <td>380점 이상 (‘18.5.12.이후 시험)</td> </tr> </tbody> </table>	구분	테스	토익	토플(TOEFL)		(TEPS)	(TOEIC)	(PBT)	(IBT)	기준 점수	700점 이상 (‘18.5.12. 前 시험)	800점이상	560점이상	83점이상	380점 이상 (‘18.5.12.이후 시험)
			구분		테스	토익	토플(TOEFL)											
(TEPS)	(TOEIC)	(PBT)		(IBT)														
기준 점수	700점 이상 (‘18.5.12. 前 시험)	800점이상	560점이상	83점이상														
	380점 이상 (‘18.5.12.이후 시험)																	
<p>○ 어학능력2</p> <p>- TEPS Speaking 및 Writing 각각 3등급 이상 또는 TOEIC Speaking 및 Writing 각각 160점 이상</p> <p>※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점수 인정</p>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임용 후 수행예정인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 다만,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시 : 주20시간 근무)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

다. 직무내용

근무 부서	임용예정 분야	임 용 예정등급	인원	직 무 내 용
농업기술 센터	수출관련 업무전반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개척활동(박람회, 마케팅활동, 수출상담회 등) ○ 수출기반조성(해외인증 등) ○ 수출유망 종목 발굴 ○ 국내외 바이어 관리 ○ 수출관련 동향 파악 ○ 거창군내 농가 및 업체에 대한 수출관련 자문

3.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4. 임용 기간 및 근무시간

- 임용기간 : 2년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당 40시간

5. 보수 수준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7급(상당)	62,044	44,066

※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경력·자격·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수 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름

6.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 (적격 또는 부적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검정
- 면접 시, 영어 구사능력을 심사하여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평정에 반영
-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예정)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2020. 12. 4. ~ 12. 8.(3일간) ※ 기간 중 업무시간 내(09:00~18:00 (토·일 제외))	2020.12.9.(수)	2020.12.17.(목) 거창군청	2020.12.18.(금)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business>)에 게시
-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 나. 접수장소 :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2층)
 -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
 - ※ 우편접수 시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거창군 수입증지 대신 ① 「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 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 「반신용 봉투」 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기 바람
 - ※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 우편접수 시 거창군 행정과 사전연락 바람 (055-940-3172)

9.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같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10.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cm) 2매 제출
 -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함.
 - 응시수수료 : 거창군수입증지(거창군청 내 민원소통과 판매) ▶ 7급 7,000원
 -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됨
 - ※ 우편접수시 거창군수입증지(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자격, 경력, 학위 등 구체적 기재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에 한함)
 -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조회
-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1.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 가.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상·중·하의 개수)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집계 결과)
- 다.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 : 거창군홈페이지 취업정보 시험채용정보에 게시

12. 응시자 유의사항

- 가.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바람
-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림
- 라.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됨

- 마.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바. 특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을 수 있음
- 사.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아.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거창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 자.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거창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행정담당 ☎055-940-3172)로 문의하시기 바람.
- 아.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거창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 자.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거창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행정담당 ☎055-940-3172)로 문의하시기 바람.

13. 코로나19 예방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 가. 면접시험일까지 중국 등 외국 및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난 지역 방문 자제
- 나.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다. 원서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등 외국 또는 국내 유행지역을 방문하였거나 확진자와 접촉 후 고열(37.5℃ 이상),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 및 검사 실시

* 신고처 : 질병관리본부콜센터(1339), 거창군 행정과(055-940-3172)

라.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면접시험 관련 사전 안내

- ① (시험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업무배제
- ② (출입금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 ③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
- ④ (응시자 및 감독관)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씻기 등을 실시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스스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을 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
 - 개인 음용수 준비

<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확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감염병의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균자와 접촉 또는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p>※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의2호(2020. 3. 4. 시행)</p>

※ 모든 응시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코로나19 예방조치 소홀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지자체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친 적이 있는지 여부도 유심히 살펴 코로나 19 확산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0년도 제1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응시자 (서명)

거창군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지방행정주사보 (수출관련 업무전반)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거창군 수입증지 날인 7,000원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2020년도 제1회 지방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20년 월 일 거창군 인사위원회위원장 (인)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거창군 수입증지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증지 날인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성 명	

나. 응시 자격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경력, 학위만 기재)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인)

자 기 소 개 서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성명	
2020. . . 작성자 :					(인)

직무수행계획서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성명	
2020. . . 작성자 :					(인)

-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하는 분야 (담당업무)를 참고하여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의 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 순으로 작성
- ※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작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제출할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1. 이용기관 명칭 :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무원 채용절차 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